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65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김남근 · 진성준 · 박 정  
김 윤 · 박지원 · 채현일  
이주희 · 박홍배 · 조인철  
안도걸 · 전현희 · 안태준  
박지혜 · 이훈기 · 이광희  
송재봉 · 정진욱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법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영향을 미치는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제2항에서 위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적 제재도 한없이 장기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행정벌과 형사처벌

은 법적 성격과 제재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제재수단이고 그 적절한 제재 시기와 불복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벌을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행정적 제재수단을 위법·부당하게 운용하는 것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벌에 처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적시에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 운용한다면 위와 같은 자본시장 질서의 신뢰회복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7조제6항 및 제430조제3항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7조제6항 중 “제2항을”을 “제2항 및 제3항을”로 한다.

제4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7조(이행강제금) ① ~ ⑤ (생략)</p> <p>⑥ 제430조(제2항을 제외한다) 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은 이 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 하여 준용한다.</p>	<p>제407조(이행강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2항 및 제3항을----- ----- -----.</p>
<p>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 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금융위원회는 제429조의2제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 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 ④ (생략)</p>	<p>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p>